

● 제31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536)

2023. 3.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536

I. 조례안 개요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시장
- 나. 제 출 일 : 2023년 2월 6일
- 다. 회 부 일 : 2023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먹거리 정책의 심의·자문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중복 기능 조정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종류 및 기능을 개편하고자 함.
- 또한 분과위원회 조정에 따라 위원수를 적정화하고 위원장 직급을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 운영 결과가 정책적으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운영회의를 조정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체계 개편에 따른 위원수 축소 및 위원장 변경 (안 제23조, 제24조)
 -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변경, 위촉위원의 요건 구체화 및 위원의 연임 횟수를 1차례로 축소 (안 제23조)
 - 위원장을 시장에서 시민건강국장으로 변경 (안 제24조)
- 나. 위원회 고문 조문 삭제 (안 제25조)

다. 위원회 회의 횟수 변경 (안 제26조)

- 정기회의 반기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

라. 기획조정위원회 조문 삭제 (안 제27조)

마. 분과위원회 종류 및 심의·자문 내용 변경 (안 제28조)

- 7개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로 기능 개편
- 분과위원회 회의 분기 1회 개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1) 입법예고('22. 11. 10.~'22. 11. 30.) 결과: 별도 첨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이하 “먹거리 시민위원회”)의 위원 수 및 회의 횟수 축소, 위원회의 기능 개편 등을 통해 효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가. 위원수 축소 및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관련 (안 제23조, 제 24조)

1) 제정안의 내용

- 본 개정안은 “먹거리 시민위원회”의 위원 수 축소(105명→30명), 위촉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신 · 구 조문 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5명 이내(당연직 제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3조(구성) ① ----- ----- 30명 이내-----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 위촉하는 ----- -----.
1. <u>당연직 위원</u> : 행정1부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1. <u>먹거리 분야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u> 등에서 추천한 사람

2. 위촉위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신 설>

2. 먹거리 분야 기관, 협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먹거리 분야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검토의견

- 첫째, “위원수 축소”의 경우 그동안 “먹거리 시민위원회”의 과도한 위원수와 잦은 회의 운영에 따른 과도한 예산 사용 문제가 지적¹⁾된 바 있음.
- 『조직담당관의 2022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에 따르면 “정책환경 변화로 필요성·기능 축소, 위원구성 편향성 여부, 회의 개최 횟수·안전수 대비 위원수가 많거나 미활동 위원이 많은 위원회”의 경우, 위원구성 및 위원수 적정화 추진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먹거리 시민위원회” 위원 축소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직담당관 2022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

[조직담당관-20611, 22. 4. 7.]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및 위원수 적정화 추진**」

- (대상) **위원수가 25명 이상인 50개* 위원회** (*별도 첨부)」

- (검토기준) 정책환경 변화로 필요성·기능 축소, 위원구성 편향성 여부, 회의 개최 횟수·안전수 대비 **위원수가 많거나 미활동 위원이 많은 위원회**」

▶ **위원구성 : 15명 이내 권고**(서울시 위원회 지침)」

- (적정화 방안) ① **활동실적 미흡 위원 해촉**, ② **위촉 분야 재구조화**, ③ **위원수 축소 등**」

1)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방만 운영 지적” (23. 2. 2.)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02500025>

- 100명 이상 위원수를 가진 다른 서울시 위원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회의 개최 횟수 대비 위원수와 안건수 대비 위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됨.

〈위원 수 100명 이상 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명	위원수 (a)	회의개최 횟수 (b)	위원수/ 회의개최횟수 (a / b)	안건 수 (c)	위원수/ 안건수 (a / c)
1	시민참여예산위원회	341명	173회	2.0	173건	2.0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99명	278회	1.1	278건	1.1
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251명	24회	10.5	27건	9.3
4	건축위원회	136명	87회	1.6	374건	0.4
5	먹거리시민위원회	111명	17회	6.5	45건	2.5
6	투자심사위원회	103명	15회	6.9	253건	0.4

- 둘째, “먹거리 시민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을 아래 표와 같이 세분화 한 것은 기존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을 추천받고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먹거리 시민위원회 위촉위원 자격 세분화〉

기존 위촉위원 자격 (제23조 2항)		개정(안) 위촉위원 자격 (제23조 2항)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① 먹거리 분야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② 먹거리 분야 기관, 협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그 밖에 먹거리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나. 위원회 회의 횟수 변경(안 제26조)

1) 제정안의 내용

-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반기1회 개최원칙 => 연1회이상 개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최소 개최 횟수 및 운영 주기를 변경하려는 사항임.

〈 신 · 구 조문 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생략)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u>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u> ,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 ----- <u>연 1회 이상 개최하며</u> ----- ----- <u>어느 하나에</u> ----- -----.
1. <u>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u>	1. <u>위원장 2명 중 1명 이상</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실제 “떡거리 시민위원회 2기” (’20.3.20.~’22.6.30.) 정기회의(총4회)의 활동현황을 조사한 결과, 위촉직 위원들의 “정기회의” 참석률이 평균 약 63%로 나타나는 등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많은 회의 개최보다는 회의 운영의 내실화가 더 필요해 보임.
- 이에 정기회의 최소 개최 횟수를 반기1회(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 되, 필요시 위원장 2명중 1명 이상 또는 재적위원3분의1이 임시회를 소집가능하도록 한 본 개정안은 그 방향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2기 떡거리 시민위원회 정기회의 운영현황〉

연번	위원회명	회의날짜	참석인원 (위촉위원 기준)	참석인원 (위촉위원 기준)	참석률
1	정기회의	2020-07-16	95	64	67.4
2	정기회의	2021-03-04	95	73	76.8
3	정기회의	2021-12-21	95	61	64.2
4	정기회의	2022-06-28	95	44	46.3

다. 기획조정위원회 조문 삭제 (안 제27조)

1) 제정안의 내용

- 본 개정안은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을 “(3단구조) 본위원회-기획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 방식”에서 ‘기획조정위원회를’ 삭제하고 “(2단구조)본위원회-분과위원회 방식”으로 전환해 위원회의 유사·중복 기능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 신 · 구 조문 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 ⑤ 생략	<삭 제>

2) 검토의견

- 실제 “먹거리 시민위원회 2기” (’20.3.20.~’22.6.30.)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총10회) 내용을 조사한 결과, 주된 내용이 “먹거리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논의와 먹거리 시민위원회의 운영 방향성에 관한 논의”이었음.
- 그런데 이러한 기획조정위원회 기능 대부분은 위원회의 ‘정기회의 기능2)’과 유사 중복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당 기획조정위원회 기능을 정기회의 등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먹거리 시민위원회 2기 기획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연번	위원회명	회의날짜	주요내용
1	기획조정위원회	20-08-14	기획조정위원회 선출,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등
2	기획조정위원회	20-10-23	제1기 위원회 활동성과, 먹거리전략 기본계획(안) 논의 등
3	기획조정위원회	20-12-23	서울시 먹거리정책 추진사항,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안) 등
4	기획조정위원회	21-01-21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 영양플러스 친환경 농식품 안정적 공급체계 개선방향 논의 등
5	기획조정위원회	21-04-13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 공모사업 주제선정, 21년도 위원회 추진계획 등
6	기획조정위원회	21-07-02	서울시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및 추진사항 논의
7	기획조정위원회	21-08-18	서울시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안), 서울시 먹거리문화축제 추진계획 등
8	기획조정위원회	21-10-22	서울시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서울시 먹거리문화축제 추진(안),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 등
9	기획조정위원회	22-02-23	제3기 위원회 구성(안), 22년도 먹거리 정책 주요사업 논의 등
10	기획조정위원회	22-06-09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안), 위원회 활동성과 등

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 2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2.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4.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 5.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6.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라. 분과위원회 종류 및 심의·자문 내용, 변경(안 제28조)

1) 제정안의 내용

- 본 개정안은 “먹거리 시민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7개에서 3개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임.

〈먹거리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개편(안)〉

기존 분과위원회 (7종류)		개정 분과위원회 (3종류)
1. 공공급식 분과위원회	=>	1. 먹거리 정책 분과위원회
2. 도시농업 분과위원회		2. 먹거리 건강 분과위원회
3. 식품안전 분과위원회		3. 먹거리 환경 분과위원회
4. 먹거리 생태·상생 분과위원회		
5. 먹거리 건강·보장 분과위원회		
6. 먹거리 공동체 분과위원회		
7. 먹거리 문화교육홍보 분과위원회		

2) 검토의견

- “먹거리 시민위원회 2기”(’20. 3. 20. ~ ’22. 6. 30.)의 분과위원회 7개의 운영실적을 검토한 결과, “먹거리 시민위원회”에서 실제 소집하여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2곳의 분과위원회(공공급식 분과위원회, 도시농업 분과위원회)가 존재함.
- 나머지 5개의 분과위원회 역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회의개최 어려움을 감안해도, 회의개최 목표(격월주기) 대비 개최 횟수가 적으며 위촉위원의 참석률 역시 평균 74.4%로 높지 않아 보임.

〈제 2기 먹거리 시민위원회 _ 분과위원회 운영현황(’20. 3. 20. ~ ’22. 6. 30.)〉

연번	분과위원회명	회의개최목표 ³⁾ (격월 운영)	회의개최 실적 ⁴⁾	회의 개최율	위촉위원 참석률 ⁵⁾
1	공공급식 분과위원회	14회	-	-	-
2	도시농업 분과위원회	14회	-	-	-
3	식품안전 분과위원회	14회	5회	35.7%	61.8%
4	먹거리생태·상생 분과위원회	14회	6회	42.9%	76.7%
5	먹거리건강·보장 분과위원회	14회	6회	42.9%	73.8%
6	먹거리 공동체 분과위원회	14회	6회	42.9%	72.6%
7	먹거리 문화교육홍보 분과위원회	14회	7회	50.0%	83.3%

3) 제2기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기간(’20. 3. 20 ~’22. 6. 30.)을 기준으로 => ’20년~’22년 연도별 격월 운영 목표치 총 14회 추계 => ’20년(총5회)(4월, 6월, 8월, 10월, 12월) ’21년(총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2년(총3회)(2월, 4월, 6월)

4)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대면 회의 개최에 어려움 존재

5) 분과위원회 소속의 ‘위촉위원’을 기준으로 참석률을 계산

- 따라서, “먹거리 시민위원회의”의 분과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좀 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그 타당성이 있음.

마. 기타 검토할 사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 관련)

- [개정(안) 제23조 관련]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당연직 제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는 조문에 명시된 30명 이내의 위원 정원수에 위원장 2명뿐만 아니라 신설된 ‘부위원장’ 1명까지 포함 되는 지 여부 명시⁶⁾ 필요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구성) ①위원회는 <u>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u> 105명 이내(당연직 제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3조(구성) ① ----- ----- <u>30명 이내</u> ----- ----- -----

- [개정(안) 외 제32조 관련] 현행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22.12.30.시행)’의 제32조 ‘위원의 제적·기피·회피’라는 문구를 ‘제척·기피·회피⁷⁾’로 수정 필요
- [개정(안) 외 제33조 관련] 제출된 개정(안)에서 삭제된 제 27조(기획조정위원회)을 제 33조 (수당)에서도 연동하여 삭제해야 조례 전체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됨.

(현행)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22.12.30.시행)

제32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⑤ 생략

제33조(수당) 시장은 제26조, 제27조⁸⁾,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p.222 => 위원회의 구성 규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원장(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한다.

7)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p.226 =>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규정에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도입과 해촉 사유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늘어나고 있다.

8) 임시회 제 316회에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제27조 (기획조정위원회) 조문 삭제 했으므로 제33조에도 연동해서 삭제 필요

3 입법예고 결과 요약

○ 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22. 11. 10. ~ 11.30.) 동안 제출된 의견은 총 5건이며, 제출된 주된 의견은 '위원회 축소에 따른 각종 먹거리 정책 등의 추진 및 운영 부실화에 대한 우려'로 나타남.

입법예고 ('22. 11. 10. ~ 11.30.)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서울 먹거리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축소 반대 (위원장 하향, 회의 횟수, 분과위원회 축소) - 먹거리 정책 추진 시 전문 분야의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정책 수립기능 미흡해 질수 있음 - 먹거리 정책 추진 의지 약화 및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수 적정화 등에 따라 (조직담당관-20611,'22.4.7.) 중복된 분과위원회 기능을 조정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확대 및 먹거리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재조정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임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축소 반대 (분과위원회 축소, 연임 횟수 축소, 위원장 하향) 	
일반시민 (이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축소 반대 (위원회 업무 조정, 위원장 하향, 회의 횟수 축소) 	
일반시민 (윤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축소 반대 (위원회 업무 조정, 위원장 하향, 회의횟수 축소, 기획조정위원회 폐지) - 분과 재조정, 정기회의(반기1회)조정 - 기획조정위원회 존치 및 위원장 재조정 	
일반시민 (서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한 농업과 학교 급식이 가능함 	

4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먹거리 시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수와 회의 수 등을 축소하고 기능상 중복이 많은 ‘하부 위원회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위원회의 물리적 축소·개편이 ‘먹거리 정책’ 추진의 질적 하락이 되지 않도록 차기 “먹거리 시민위원회” 계획단계부터 내실 있는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이와 더불어 본 개정안 제23조 제1항의 명시된 “30명 이내”의 위원 총정원에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부위원장 1명”이 포함되는 여부를 분명히 하고
- 본 개정안과 연관된 현행 조례 제32조의 제목 용어를 ([기존] 제적·기피·회피 -> [수정] 제척·기피·회피) 정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출된 개정안에서 삭제한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를 현행 조례 제33조 본문에서도 같이 연동하여 삭제해 전체 조례의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문 의 처

신현태 입법조사관 (02-2180-8145)